검토보고서

건 명	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의안번호	제19호	제 출 자	논산시장
제 출 일	2023. 2. 10.	회 부 일	2023. 2. 13.

1. 제안이유

「주차장법 시행령」일부개정('21.4.21.시행)에 따라 과징금 상향조정 된 부분을 본 조례와 부합되게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주차장법과 부합되게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 금액 조정(안 별표3)

3. 검토의견

- 가. 주차장법 일부개정에 따라 주차장 관련 과징금 상향조정된 부분을 본 조례와 부합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
- 나. 「지방자치법」제28조, 「주차장법 시행령」제17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